

서울시 초미세먼지의 25%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발생원인!

더 맑고 건강한 하늘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 자동차는 배출가스 몇등급인지 알아보세요
(<https://emissiongrade.mecar.or.kr>)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I·SEOUL·U
서울국제도시

서울특별시

서울 하늘이
옛날 하늘과 달라
한양도성내
5등급 차량의
진입을 막아 보자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019년 7월 1일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추진 근거

- ▶ '시장은 자동차 통행량,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정도를 고려하여 운행제한 가능'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30조, 시행령 제48조, 시행규칙 제7조
- ▶ '녹색교통 확산 운동 등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색교통지역 지정(국토부 고시 제2017-144호, '17.3.15.)

5 제한 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대상)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15.6% 감축 예상

- 제외대상
 -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등생업활동용차량, 국가공용특수목적차량, 저공해조치차량 등
- 유예 대상(안)
 - '19. 10. 31.까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에 한해 '20. 6. 30.까지 유예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과 장착 불가 확인을 받은 차량은 '20. 12. 31.까지 유예

🕒 제한 시간

06시~21시 / 상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 제한 지역

서울시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15개동)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7~ 시행 시기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12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단속 시범 운영
(녹색교통지역 45개 진입 지점)
- 과태료 1일 1회 25만원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 제48조)

• 다산콜센터(02-120)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생계형 차량 특별 지원

▶ 지원대상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5등급 차량

▶ 지원내용(보조금 상향 등)

- 조기 폐차 보조금 상향 지원(최대 300만원, 2019)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 지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 보조금 약 90%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차량 100% 지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2019. 2. 15.)으로 저공해조치 대기 수요가 많으니 조속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 1577-7121 / 저감장치 : 1544-0907)
-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2133-4414, 3653, 3655)

